

문서번호	건축과-110865
결재일자	2015. 12. 3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건축2팀장	건축과장	도시관리국장
이호경	조동한	안종식	12/31 이기배
협 조	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1팀장 김태수 건축시설팀장 문영선		

**- 2016년도 -**  
**광진구 입무대행건축사 지급수당 조정(인상)**



**도 시 관 리 국**  
**( 건 축 과 )**



# - 2016년도 - 광진구 업무대행건축사 지급수당 조정(인상)

2016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급수당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·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준용하여 금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I 추진개요

### ■ 근거

- 건축법 제 27조(현장조사 ·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
- 건축법 시행령 제 20조(현장조사 ·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
- 건축법 시행규칙 제 21조(현장조사 · 검사업무의 대행)
- 서울시 건축조례 제 20조(업무대행수수료)
  -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제3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**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·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.**
  -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

### ■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

구 분	2012.01.01기준	2013.01.01기준	2014.01.01기준	2015.01.28기준	2016.01.01기준
기술사	330,109원	319,299원	334,901원	340,765원	348,021원
특급기술사	258,612원	245,203원	247,598원	249,900원	261,026원

## II

### 조정사유

-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가 2016.01.01일 기준으로 11,126원 인상되어 우리구 2016년도 예산 (사용승인검사 수수료 지급) 책정기준인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맞게 조정 필요
  - \* 업무대행건축사 수수료는 ‘15년 이전 계속사업임에 따라 ’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‘를 적용

## III

### 행정사항

- 조정액 : **261,000원** (공급가액 : 237,272원, 부가세액 : 23,728원)
- 조정근거 : “2016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” 공표 자료  
기준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지급
- ※ 우리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 하여 결정
- 기준일 : 2016.01.01. 업무대행건축사 수수료지급분부터 시행

붙임 : 201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 [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].

.끝.